

◎ 여비규정

제정 2007. 4. 10.
개정 2008. 2. 11.
전부개정 2012. 1. 17.
개정 2012. 12. 26.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11.>

제 3 조(공무원여비의 준용) 별표 1(국내여비) 및 별표 2(국외여비) 중 1호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을 적용하며, 2호의 적용은 사무처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시 본회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 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여행일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 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② 여행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 한다.

제 6 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근무지내 : 대구시, 경산시 지역

나. 근무지외 : 위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②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기준표에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 이용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국내여비 기준의 변동시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한다.

제 7 조(여비의 조정) 2인 이상의 직원이 동일목적으로 동행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 목적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기준표의 여비를 지급한다. 단, 국외여비 기준의 변동시는 지방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한다.

제 9 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2. 2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2. 12. 26.>

국내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해당 임·직원
1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
2호	사무처 직원

[별표 2] <개정 2012. 12. 26.>

국외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해당 임·직원
1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
2호	사무처 직원